

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6. 15(월) 평창군수(재무과)

나. 회부일자 : 2015. 6. 17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5. 6. 22(월) 제21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장동기)

-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따라 조례를 개정하여,
-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 신설하고,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 
경우

제39조제3항 중 “10일간”을 “1개월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